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10. 13.(수) 총 11매(본문 3, 참고 8)	
담당 부서	국제협력총괄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유은원, 사무관 이근호, 사무관 황지원 • ☎ (044) 200-5330, 200-5341, 200-5342 	
	해양개발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구도형, 사무관 이호근 • ☎ (044) 200-5240, 200-5664 	
	해양환경정책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강정구, 사무관 안진우 • ☎ (044) 200-5280, 200-5285 	
	해양보전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최성용, 사무관 신영락 • ☎ (044) 200-5300, 200-5303 	
	해양생태과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이재영, 사무관 박자현 • ☎ (044) 200-5310, 200-5327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 인도네시아와 해양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 확대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및 해양환경 협력 확대 합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해양투자조정부와 10월 13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관 간 면담을 통해 양국 해양수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양국이 '한-인니 해양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인니는 약 600기 이상의 해양플랜트를 운영하는 등 동남아에서 가장 큰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최근 인니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해양플랜트 노후화에 따른 해체·재활용 사업, LNG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해양플랜트 분야의 투자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분야

양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공동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민간교류 촉진, 해양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협력의 신호탄으로서, 양국은 올해부터 인니 칼리만탄 동부에 있는 노후 해양플랜트 3기를 해체하는 공동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인니 해양플랜트 해체 시장에서 실적(Track-record)을 쌓고, 약 360조 원 규모의 세계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앞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djaitan)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을 만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Conference of Parties) 공동 대응 등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이 유치를 추진 중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인니 정부의 지지도 당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해양수산 장관회의'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아세안은 10개국 중 9개국이 바다와 인접한 해양국가로 구성된 만큼, 이 회의체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산자원 관리 및 탄소중립 등 주요 해양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양국은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통한 수산양식 및 해양과학 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맹그로브 숲과 갯벌 등 블루카본 자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와 전문가 교류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니는 세계 최대의 맹그로브 숲을 보유한 국가이며,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양국이 보유한 블루카본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경우 탄소중립 달성 및 탄력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니와 해양 산업, 해양환경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한-아세안 해양수산 장관회의 설립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바다를 매개로 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의 기틀이 될 의미있는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인니를 비롯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참고 1

인니 MOU 체결행사 등 일정 개요

□ 일정 개요

- (일시) '21. 10. 12. (화) ~ 16. (토), 3박 5일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치르본
- (출장단) 해수부 장관, 국제협력정책관 등
- (주요내용) COP 대응 및 맹그로브 복원 등 탄소중립 관련 양자면담, 해양플랜트서비스 MOU 체결식, 해양쓰레기 등 해양수산 현장 방문

□ 주요 활동

일 자	주 요 내 용
10.12.(화) 1일차	· (이동) 한국(인천)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0.13.(수) 2일차	· 장관님-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양자면담 (COP 공동대응, COP28 유치, 맹그로브, 한-아세안 해양장관회의 등 논의) · 해양플랜트 서비스 협력 MOU 및 기업간 협력의향서 체결식 · 해양쓰레기 및 맹그로브 복원 관련 공동세미나
10.14.(목) 3일차	· 짜따름강 등 해양쓰레기 복원 양국 협력방안 논의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방문 및 해양과학기술협력 논의
10.15.(금) 4일차	· 맹그로브 측정 기술시연 등 블루카본 협력 · (이동)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한국(인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간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이하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이하 “해양투자조정부”)는 (총칭하여 “양 당사자”)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와 지속적인 활용이 당사국들간의 공동 관심사임을 동의하고, 인도네시아 선박법 17조(2008)를 상기하고, 2016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해양 협력증진을 위해 합의한 양해각서가 양국의 협력에 기여하였음을 인식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의 협력이 해양·수산분야의 공동이익과 당사국들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을 희망하며, 양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항 목적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양 당사자들 간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해 기존 양 당사자들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있다. 양 당사자들은 친선, 평등, 호혜, 상호 신뢰 및 이익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을 추진한다.

제2항 정의

이 양해각서에서 해양플랜트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플랜트”란 연안과 원양에서 석유, 가스 등의 해양 자원들을 시추, 생산해내는 활동을 위한 장비·시설에서부터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랜트 형태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란 해양플랜트와 연관된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항 협력 분야

이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은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1.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공동 기술 개발
2.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관련 민간교류 및 협력 촉진
3.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구축 및 인력 양성
4. 해양플랜트 해체 및 재활용 사업

제4항 이행

1. 양 당사자는 제5항에 의거 본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2.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협력 프로그램 또는 협력사업에 관한 이행 약정 또는 행동 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필요시 지정기관을 통해 각국 정부 기관 간 그리고 각국 사업체 간 협력을 권장하고 촉진한다.

제5항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공동위원회

1. 공동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투자조정부의 실장급 인사가 공동의장을 맡고, 양 당사자가 각각 5명 내외로 선임하여 총 인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교대로 매년 또는 상호 합의한 때에 개최 된다. 회의는 양국 합의 하에 화상 회의 또는 양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기타 수단을 통해 개최 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a. 제3항에 의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의 협력계획 수립, 검토, 자문 및 권고
 - b. 지정기관을 통한 프로그램/프로젝트 이행의 조정, 감시, 평가
 - c. 양 당사자 간 추가 협력을 위한 잠재적인 프로그램/프로젝트 발굴
 - d. 기타 양 당사자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 협력 및 관련 산업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이행계획의 수립

4. 공동위원회는 양해각서 하에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국가 법률 및 규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들 간 평등한 의사결정 절차를 기초로 자체 규정을 확정한다.

제6항 지정기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를 대표하여 양해각서 이행을 책임지는 지정기관은 양 당사자 간 별도 합의 하에 추후 결정된다.

제7항

재원조달

1. 양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양해각서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양해각서에 따른 공동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례별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방식에 따라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부담한다.
3. 양해각서 하에 공동활동과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은 파견 측에서 부담한다. 물류 준비 지원 비용은 파견 받는 측에서 부담한다. 회의 장소에 대한 비용은 회의를 주최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제8항 기밀유지

1. 양 당사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수취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제공한 문서, 정보, 기타 자료의 기밀을 유지한다.
2. 어느 일방 당사자도 이 양해각서 하에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동안 취득한 기술문서 혹은 정보를 양해각서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일방 당사자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면서 취득한 기밀문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 일방 당사자에게 공개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 항의 각 항목은 본 양해각서가 만료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동 결정한다.
5. 이 항의 각 항목은 양 당사자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9항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양 당사자는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규정들, 그리고 양 당사자들이 체결한 기타 국제 협약들에 따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실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접근을 결정 및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유전자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항 지적재산권

1.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사용한 양 당사자들의 지적재산권은 해당 지적 재산권을 만든자가 소유한다.
2.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상대 당사자의 이름, 로고 또는 공식 엠블럼은 사용할 수 없다.
3. 양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 간에 합의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공동 소유한다.

제11항 분쟁의 해결

이 양해각서의 해석, 이행 혹은 적용에서 제기되는 이견 또는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한 우호적 방식으로 해결한다.

제12항 개인 활동 제한

양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에 따른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이 양해각서의 목적 외로 상대방의 국내 정치 활동이나 상업적 벤처 또는 기타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제13항 중단

각 당사자는 국가 안보, 국가 이익,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권리를 보유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 후 발효된다.

제14항 효력의 발효, 종료, 개정

1. 이 양해 각서는 양 당사자들이 서명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양해 각서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양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하에 연장 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양해각서를 종료 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들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양해각서의 종료는 이 양해 각서에 따라 진행중인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양해 각서는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동의하에 수정 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날짜에 발효되며 이 양해 각서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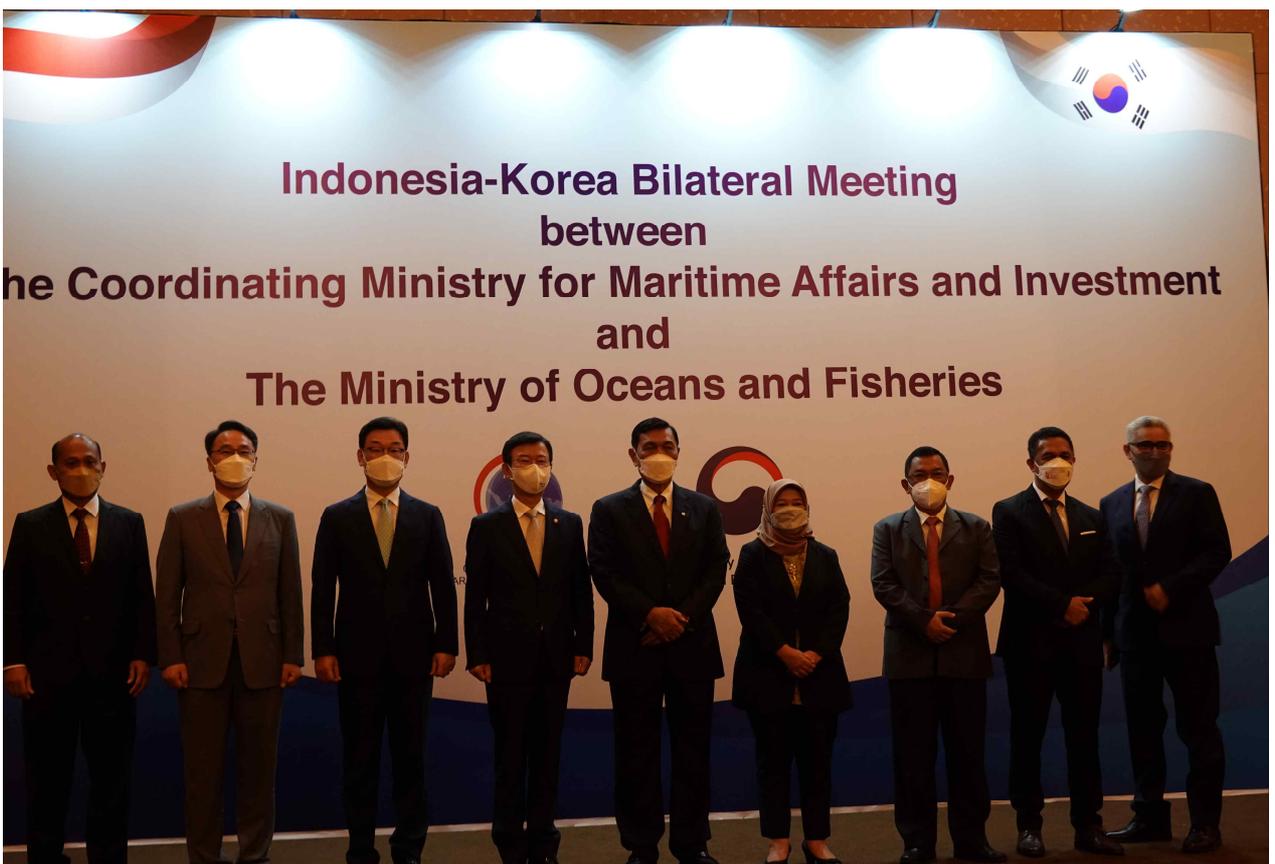
이 양해각서는 2021년 10월 13일,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서명되었다. 각각의 번역본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만약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를 대표하여

MOON, SEONG-HYEOK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를 대표하여

LUHUT BINSAR PANDJAITAN
조정장관



13 October 2021, Jakarta - Indonesia

